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건설장비와 조종원을 분리하여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전체적으로 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인의 근로자로 적용하여야 한다.

Q 본사직원 현장출장 근무 중 재해에 대한 적용여부

A 본사 소속 총무직 근로자가 본연의 관청 및 총무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행위에 따라 사업주의 출장 명령에 의하여 건설현장으로 출장하여 재해를 겪어주는 업무를 보조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면 본사 산재보험으로 산재보험처리를 할 수 있음.

즉, 통 피재자는 본사 총무직 근로자로 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아 왔고, 본사에서 총무업무를 주업으로 하였으나 사업주의 출장명령에 따라 업무에 잠깐 현장에 나가 재해를 겪어주는 보조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당하였다면 본사소속으로 산재보험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한국종합노무법인인솔사무소 (031-877-7522-3)

Q 건설기계관리법상의 중기운전원의 적용여부

A 1. 건설기계임대사용확인계약서에 『건설기계와 그 조종원은 임대기간동안 임차인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임차인 지시에 순응하며 임차인의 원청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본 확인서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상호 인정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중기조종원의 산재보험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2. 임대인이 고용한 중기조종원과

건설기계를 함께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위 확인계획서 내용과 같이 『임차인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상호 인정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있어 중기조종원과의 사용종속관계는 임대인에게 있음.

3. 따라서 건설장비의 임대계약에 있어 건설장비와 조종원을 포함하여 그 전체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중기조종원의 계속적인 근로계약은 차주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 위 "건설기계확인계약서"내용 중에 비록 "임차인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상호 인정 한다"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있더라도 사실관계에 있어

전·기·상·식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이사 **안병호**



되어 일해보았더니 C.T부 배수가 누락됨에 따라 소급하여 한꺼번에 청구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공장 지점상 분할납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A C.T부 계량기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배수를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계산하여야 하나 업무착오 등으로 배수적용이 안된채 요금이 청구되던중 배수적용누락을 발견하여 해당기간의 사용전력량에 대한 요금을 재산정, 당월 전기요금에 일괄 청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누락요금을 일시에 전액 정산하여 청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추가요금이 고액이고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간은 추가요금 발생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031-541-9111)

Q 새로 집(또는 공장)을 구입하고 보니 전 소유자가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행방을 감춰 체납요금을 정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체납요금이 많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데 분납이 가능하니까?

따라서 부동산 매매, 임대차 대금지불시에는 전기요금미납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체납된 전기요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 현행상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분할납부 요청시 약속 이행의 보장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현장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분할납부도록 처리해 드립니다.

Q 산업용 제조업체입니다. 이달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수십배나

A 신고객이 명의변경절차 없이 전기를 계속 사용하거나 상수, 중수, 기업활동 및 취독에 의해서 신고객이 명의변경을 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고객의 전기요금 등 모든 관리의무가 승계됩니다.

의·학·상·식

포천병원 안과과장 **신재용**



또는 잘못해서 약물이나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 일시적인 처치로 눈을 씻어내는 것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눈곱이 너무 많이 끼었을 때, 갑자기 먼지가 많이 들어 갔을 때, 또는 잘못해서 약물이나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 일시적인 처치로 눈을 씻어내는 것은 필요하다.

● 눈병에 눈을 씻는 것은 백해무익
따라서 눈병이 있을 때 무조건 눈을 씻어주는 것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봉산수나 소금물이 눈을 보호하고 맑게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상식이다.

이와 같이 치료가 목적인 경우에도 세안이 해로운데 하물며 눈병도 없는 사람이 눈을 보호한다고 습관적으로 씻는 것은 눈을 나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결과밖에 안된다.

따라서 눈을 맑게 하는 방법은 눈의 휴식을 피하고 눈이 피로해지면 충분히 휴식을 주는 것이 가장 좋다.

☞ 포천병원(031-539-9114)

Q 밝고 건강한 눈을 위한 눈 건강관리법

● 특별한 경우에만 세안을

예전에는 안과에 가면 의뢰 눈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고, 눈에 묻은 때를 씻어내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눈을 씻으면 상쾌한 느낌이 들고 치료받는 것 같은 기분이 나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서 세안은 눈을 보호하는 중요한 처치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안과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안을 하지 않는다.

● 눈물이 세안의 기능을 한다
눈은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먼지가 들어가도 곧 눈물로 씻겨지고 세균이 들어가도 눈물 속에 있는 라이저자임이란 효소가 살균 작용을 해서 눈을 보호한다. 눈물은 필요에 따라서 누선에서 분비되어 눈 속의 먼지나 더러운 물질을 씻는 다음 코로 흘러 내려간다.

다시 말해 눈은 눈물이 라는 돌도 없는 자연성 안약으로 항상 깨끗하게 씻겨지고 있다. 다만 눈을 씻을 필요가 있을 때는 눈물의 작용만으로 는 막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뿐이다.

● 눈 세안이 필요할 때에는
예를 들면 눈곱이 너무 많이 끼었을 때, 갑자기 먼지가 많이 들어 갔을 때,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서적대금청구에 대하여 민법상 미성년자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청약의 철회를 주장하여 대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2002년 3월 30일 법률 제6688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청약의 철회 및 그 효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Q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 할 수 있는지]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며칠만에 겨우 알아낸 주소지로 계약을 취소하니 물건은 찾아가라,고 통지하였으나 주소로 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대금지급서를 받았는데 이 경우 위 서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서 책을 구입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140조, 제146조).

그러므로 법정대리인인 귀하는 상대방에게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서적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 사안은 방문판매업과 동시에 할부판매가 될 것이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바, 이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켜 식민지 지배를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해 군사들의 성적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 있었다고 본다. 2차 대전이 패망 한 일제가 조선을 떠난 후 새로운 통치자로 입성한 미군정은 1946년 법령 제 70호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라는 법으로 부녀자들의 매매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나 이법은 인신매매만 금지했을 뿐 공창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이어 1947년 법률 제 7호에 의해 '공창제도 폐지령'을 제정하여 전국에서 공창을 폐쇄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제도로서의 공창은 없어졌지만 사창이라는 또 다른 매매가 문화가 창궐하게 되었다.

☞문의: 포천가족·성 상담센터(031-542-3171)

Q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 그 이후

【성매매 극복을 향한 국제십포지엄에서 (다시함께센터)조진경 소장님의 글 발췌한 내용입니다.】

■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2004년 3월 22일 제정되고 같은 해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 방지법(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이하 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

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보호법)로 구성되어 있다.

■ 성매매방지법 제정전의 한국상황

한국역사에서 볼 때, 성매매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때는 일본 식민지 시대이다. 일본은 1904년 일본 공사관 산하 「경성영사관령 제3호」에 의해 전문직업인으로 창기와 창녀를 사회적으로 공인하였다. 이것은 당시 일본의 공창제도를 조선에 이식시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약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기타소득을 지급 받을 당시 원천징수 한 소득세로 모든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문제는 원천징수 되는 세율과 종합과세 될 때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기타소득을 원천징수 할 때의 세율은 20%이지만,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8%, 17%, 26%, 35%까지 4단계이므로 종합소득세율이 8%나 17% 적용되는 경우 종합과세 하면 환급이 발생하게 되어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20% 이상의 세율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였다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꼭 비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박운중 031-872-6116

Q 【소액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원인 급여생활자가 여가를 이용하여 집지사나 언론사에 원고를 기고하고 받는 원고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세 중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A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을 제외한 것으로 원고료, 강연료, 사례금 등이 있습니다. 즉, 소설작가 처럼 글을 쓰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원고료는 사업소득에 속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 분리과세가 가능한 기준금액은 실제로 받은 강연료 등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원고료나 강연료 등의 필요경비는 80%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연간 수령액 1,500만원까지는 분

차별화된 맛을 제공하는 일번지 암소이동갈비

1층 돼지갈비, 암소이동갈비, 2층 풍천민물장어

16년동안 한결같은 맛을 제공하고 있는 일번지 암소이동갈비는 최상급 이동갈비 사용으로 육질에서 당연 으뜸입니다.

★250석 보유, 연중 예약 실시★
★고객을 위한 차량 항상 대기★

신메뉴 출시

자연산장어 민물장어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49-4
대표 **김애화**
031) 542-1887~8